

이슈페이퍼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박 동 · 이익규

이슈페이퍼 2015-3

이슈페이퍼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박 동 · 이익규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박 동¹⁾ · 이의규²⁾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II. 사회수요 변화와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3
III.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13
IV.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18
V.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8
부록	29

이 연구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저생산성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수요 변화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우리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검토,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분석, 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는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양적 팽창기에 구축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적 팽창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여하히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주제어: 사회수요, 저성장 시대, 교육 패러다임, 고등교육개혁, 고등교육인재 양성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inmypark@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mail: ekleee@krivet.re.kr).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의 구조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의 확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등에 기인한 사회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과거의 양적 팽창기를 배경으로 구축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취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5).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59.4%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 또는 졸업을 연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정도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고 노동시장 내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를 낳고, 다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파생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즉, 계층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의 긍정적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신분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저생산성의 서비스업이 팽창함에 따라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년 실업의 심화, 사회 불평등 확대 및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등교육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 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산업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청년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 등 산업수요의 변화, 인구구조 및 소득구조의 변화 등 산업 및 사회 수요의 변화에 맞는 고등교육인력 양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초에 정부는 교육 분야 개혁 과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특히,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산하의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분야 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

다. 이러한 고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7월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양적 팽창에 기초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이루어 낼 것인가,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지식·기술에 기반한 창조산업의 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사회수요 변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수요 변화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국내 고등교육개혁 현황과 문제점 검토, 주요국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분석,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에 입각하여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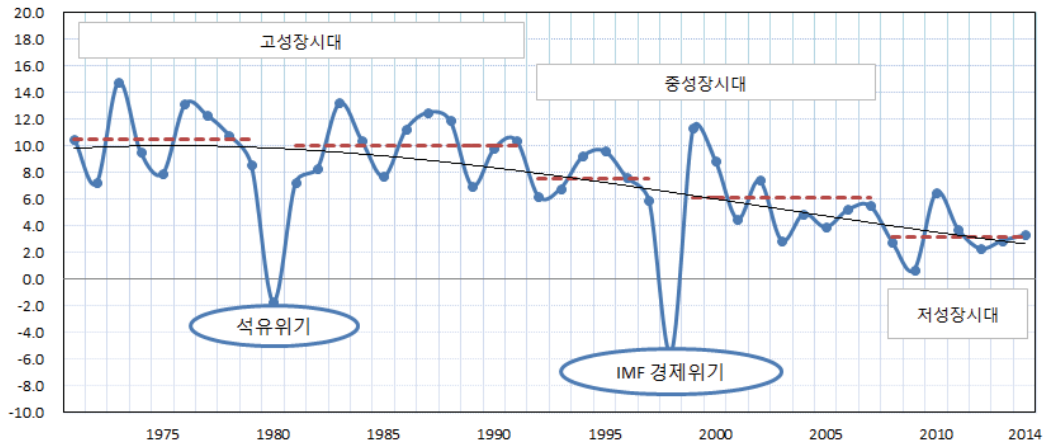
II. 사회수요 변화와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1. ‘사회수요 변화’의 개념 정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수요 변화’의 개념을 고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수요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를 포괄한다.

첫째, 사회수요 변화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의 구조화 등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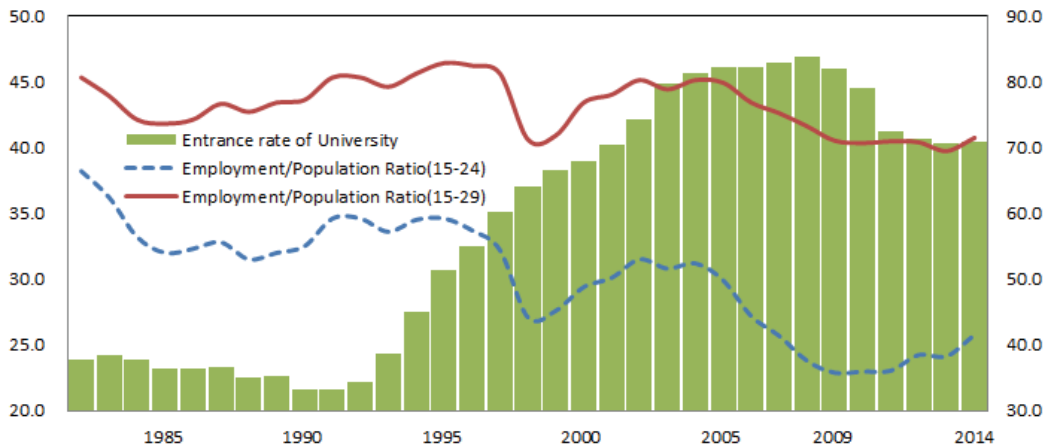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김형만(2015)에서 재인용.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으나, 1997년 말의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6~8%대의 중성장 시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3%대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2] 대학 진학률 및 청년 고용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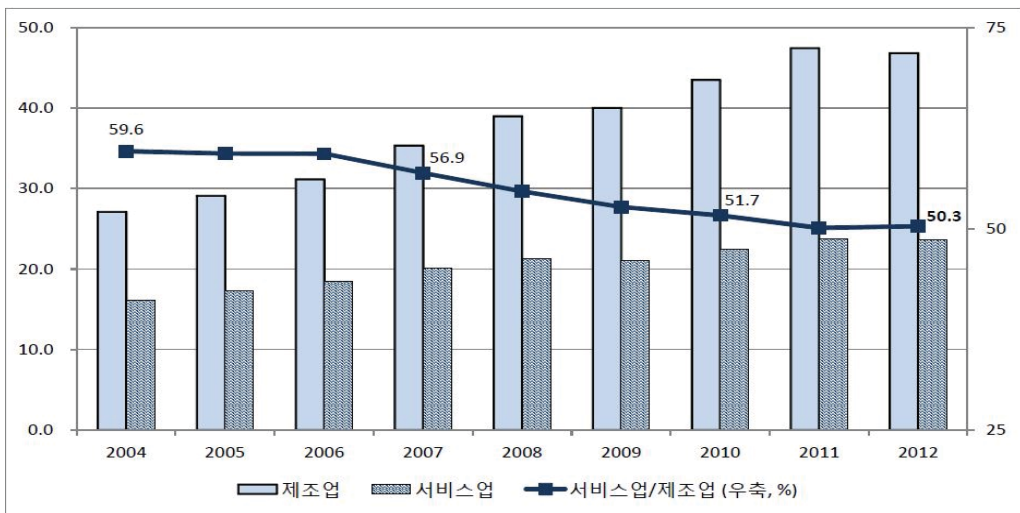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김형만(2015)에서 재인용.

그리고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인해 15~24세 기준 청년 고용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0% 안팎에 머무는 등 1980년대 초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80%를 넘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이제는 70% 초반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두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회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사회수요 변화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저임금 저생산성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1993년 62.0%에서 2011년 73.0%로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아래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주: 1)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각 연도 명목 부가가치와 노동시간으로 계산함.

2) 실선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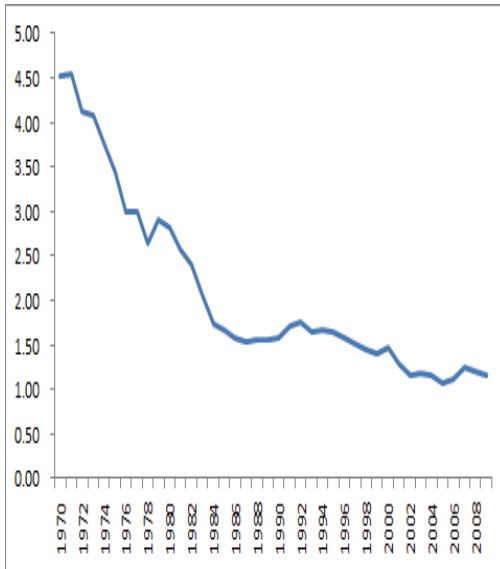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14),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박동 외(201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서비스업의 이러한 저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업 고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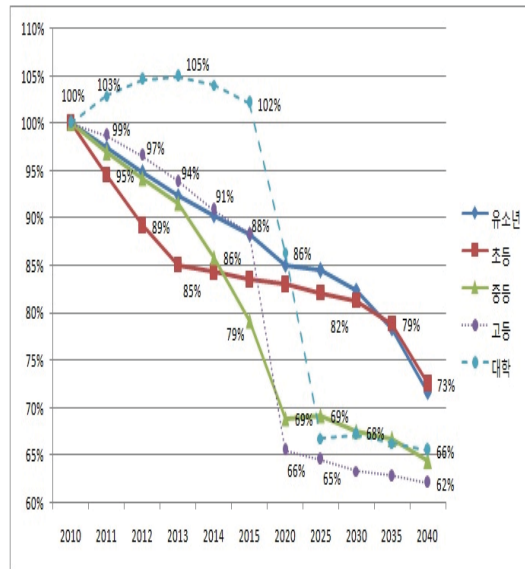
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망서비스산업 핵심 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박동 외, 2015).

셋째, 사회수요 변화는 우리 사회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사회로 변모하면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4]의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년에는 2015년 현재보다 대학생 인구가 93.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학생 수가 약 1/3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4]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및 학령인구(6~21세)의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2.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

1) 양적 팽창기의 고등교육개혁 주요 내용: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능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대학 병목 현상 발생,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고등교육 투자 부족 등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995년 문민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5.31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안병영, 2014; 안병영·하연섭, 2015)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으로 한국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부정적 평가(임천순, 2005; 김신영 외, 2011) 등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신동, 2014).

5.31 교육개혁은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그치지 않고, 이후 4차례에 거친 수정을 통해 1997년 6월 2일 제4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 22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 종합개혁안으로, 교육부에서 이를 다시 120개의 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전의 대통령 자문기구들과 달리 단순한 정책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강력한 기구로 5.31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5.31 교육개혁은 그 공과를 떠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간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교육개혁은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교육 분야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각각 4개 분야와 2개 분야로 나뉘며, 각각 19개와 23개의 세부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5.31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대학 입학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특히 당시 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인재의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구축과 일과 학습이 통합되는 신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많은 과제들이 추진되었다(<표 1> 참조).

〈표 1〉 5.31 교육개혁 중 고등교육개혁 관련 세부 내용

분야		과제	전면/부분 시행	법 개정 추진	연구 검토	계
고등교육 분야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교 전·편입학 기회 확대	9		3	12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도입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대학의 정원 자율화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지원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대학 입학제도	대학 입학제도 개선	1		1	2
		선택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능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사학의 자치역량 제고	2		1	3
		사학에 대한 재정 금융세제 지원강화				
사학의 전문경영체제 육성						
연구의 세계화	연구역량 강화	2			2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설립					
		계	14		5	19
평생 및 직업교육 분야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 기반 구축	학점은행제의 도입	4	1		5
		시간제 학생 등록제의 도입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사회교육 추진체제 구축				
		국공립시설, 국민 평생학습장으로 개방				
	신직업교육 체제 구축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13	1	4	18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용성 제고				
		실업계고 시설살비 현대화 및 재정지원 강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				
		기능대학의 역할 강화				
		신대학 및 신대학원대학 설립 및 운영 지원				
		전문직업 분야 석박사 도입 및 전문대학원 확충				
		여성 및 취약계층 직업교육 기회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						
교육구좌제 도입 검토						
		계	17	2	4	23

자료: 교육부(1998a), 교육부(1998b)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국민의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5.31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계승하고 구체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정책기조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병영 외, 2014).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개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학부제 도입, 대학구조조정, 두뇌한국 21(BK21)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은 학부제 도입을 통한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 모색, 두뇌한국 21(BK21) 사업을 통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부제 도입은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사회 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른 학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구성, 학사운영, 교수와 학생 간 관계 등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두뇌한국 21(BK21) 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고등교육정책 중에서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대학원 수준 인력양성 사업이다. 우수대학원을 선정하여 연구력 향상과 대학 입시 개혁 목표를 추구하고 신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문 후속세대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BK21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부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였다.

참여정부는 여타 분야에서는 기존 5.31 교육개혁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전망에 따라 기존의 교육개혁 방향과 반대되는 ‘대학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학벌과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대학 입시제도(내신 9등급제)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통폐합을 통해 2004~2010년 기간 중 18개 국립대학을 10개로 통합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부분적으로 막기 위해 대학 신설 요건을 강화하였다.

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안으로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대학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가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도화하였다. 또, 지방대학 육성 지원과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대학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누리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 저성장기 고등교육개혁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화는 교육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5.31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던 당

시 고용흡수력이 컸던 제조업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한 해외 진출과 자동화로 인한 생력화(省力化)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서비스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증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대졸 인력을 배출하는 양적 접근이 아닌 창의성을 갖춘 질적 접근이 중요한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과거와 같은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성(creativity)에 기반을 둔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김이경 외, 2014; 이정재 외, 2015).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성장기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었으나,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자율화, 재정지원, 대학정보공시제 활성화, 대학연구 국제화 등 5.31 교육개혁에서 사실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교육제도를 수립하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를 추진하였을 뿐이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의 구조화, 학령인구의 급감 등 사회 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의 개혁을 위해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분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대학이 적극 연계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인문학 진흥(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표 2> 참조).

〈표 2〉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3대 목표 및 6대 핵심개혁 과제

목표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
핵심 과제	① 자유학기제 확산 ② 공교육 정상화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 개혁 ④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⑤ 일학습 병행 확대 ⑥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자료: 교육부(2015. 8.),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

현 정부 이전 시기까지 정부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정부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및 고등교육 분야 정책 요약

	양적 팽창기			저성장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기 본 방 향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민주화 상향식 교육개혁	교육의 형평성 및 공공성 제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격화
고 등 교 육 분 야	-대학정원의 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도입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복수전공 및 전편입학 기회 확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강화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 -9월 입학기제로의 전환.	-대학 입시제도 개선 -학부제 추진 -학생선택권 존중 전공 운영모형 -두뇌한국 21(BK21) 사업 -대학구조조정 -국립대학 구조조정 및 평가사업 -법학, 의학 및 교원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2008 새 대입제도 (내신 중심 9등급제) -BK21 사업 2단계 착수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NURD) -학교기업-산학협력단 추진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1만 명 감축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정보공시제 -「사립학교법」 개정 및 개방형 이사제 도입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대학정보공시제 (대학알리미 사이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대학구조조정(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재정 지원제한대학) -서울대 법인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WCU) -학부교육선진화선도 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LINC)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자료: 교육부(1998a)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3. 기존 고등교육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부실대학 양산으로 인한 고등교육 경쟁력 약화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1996년 134개였던 대학 수는 2014년 189개로 증가하였으며(대학알리미, 2014),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08년에 8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역으로 대학 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학자금 대출 급증, 고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취업난과 대졸자 구직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대다수의 대학이 입학 정원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어, 이 과정에서 설립된 대학들 중 부정이나 비리로 처분을 받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이나 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 기준으로 27.3명(의학계열 제외 시 31.8명)으로 OECD 평균 15.4명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4년을 기준으로 60여 개 국가 중 5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IMD, 2014).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은 곧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막대한 국가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고등교육제도와 사회수요(시장) 간의 불일치

5.31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할 당시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가 중요하였으나,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창조인재들을 양성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인지적 지식은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비인지적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교육이 지나칠 정도로 인지적 지식 축적에만 몰두함에 따라 학생들은 취업 시 자신의 전공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무관한 스펙을 쌓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교육제도가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공급’ 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다(박남기, 2015). 산업체는 물론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한 고용 미스매치가 더해져 이제 청년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고용절벽이 형성되고 있다.

3) 정부 지원 및 평가 방식에 의한 대학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제약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부분 정부 중심의 하향식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개혁은 대부분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수준에서 마련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학구조개혁, 입시제도, 정부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에 의해 오히려 대학들이 획일화되고 전략적으로 담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학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대학 입시제도, 정부지원사업과 그와 관련한 평가 방식을 수·보완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대학 자체와 학생을 위한 사업들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III.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1. 미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사례

최근 미국의 고등교육개혁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학 교육비의 상승으로 인한 대학 진학률 감소와 중도탈락률 증가로 미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980년 전 세계 1위에서 2012년 기준 12위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미래 산업사회에는 고등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고등교육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대학 교육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16% 증가(1982~1983년부터 2011~2012년 회계 연도)한 반면에 4년제 공립대학교 학비는 257% 증가(1982~1983년부터 2012~2013년 회계 연도)하였고,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 후 26,000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크리스윤, 2013).

이에 미국 정부는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무상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인당 최대 지원금을 1999-2000년 회계 연도에 3,125달러에서 2013-2014년 회계 연도에는 5,635달러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혜학생 수는 376만 명에서 866만 명으로 약 2.5배, 지원 액수는 72억 달러에서 314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NCES, 2015). 이 밖에도 유상지원 프로그램의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세금 환급과 이자율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³⁾

오바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하여,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취업연계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 평생직업교육 실현과 더불어 전문대학 학생이 향후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커뮤니티 칼리지가 고급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ARA)을 근거로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20억 달러를 지원하며, 주정부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9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⁴⁾

또, 미국 전역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연구자, 정부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New College Scoreboard’ 를 운영하고 있다.⁵⁾ 미국의 대학 정보공개 시스템(College Scoreboard)은 연간 등록금, 졸업률, 졸업 후 평균 임금, 주요 특성화 학과, 학생 분포 등 각 대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https://www.whitehouse.gov/issues/education/higher-education> 참조.

4) <https://www.whitehouse.gov/issues/education/higher-education> 참조.

5) <https://collegescorecard.ed.gov> 참조.

2.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사례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1980년대 이전까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이후 교육기회의 확대보다는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구와 학문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대학들이 공공재원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영국 정부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은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지다가 대학 입학률 급증과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1998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한 이후(최정윤 외, 2011), 2012년 10월 보수당 정권에서 대학 등록금을 3,375파운드에서 9,000파운드로 상한선을 책정하고 학자금 지원도 중단하였다(Roger, 2013).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학자금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엄격한 질 평가를 통한 예산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심화된 지식이 요구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대학이 개인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대신 대학교육의 급증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을 평가하며 철저한 대학교육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우선, 대학개혁을 총괄하는 정부를 비롯하여 비정부 기구 및 기금을 설립하여 엄정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의 주도로 영국 내 대학을 평가하여 정부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평가 사업으로 NSS(National Student Survey)⁶⁾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가리킨다. 이는 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의 경쟁력을 직접 평가하게 함으로써 미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 선택을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독일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사례

독일 대학들은 대부분이 공립으로 2010년 기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10%

6) <http://unistats.direct.gov.uk> 참조.

에 불과하여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지 않는다(Hur and Bessey, 2013). 독일의 고등교육은 2007년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예산은 주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2012년 10월 기준으로 16개 중 2개의 주에서 학부 교육을 위한 등록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고등교육이 상업적 수단이나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Powell et al., 2012). 특히, 독일은 직업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로 인해 고등교육 참여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최근 지식과 창의성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는 고급인력을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참여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철저히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교육 분야와 달리 직업교육은 독일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 입학자격(아비투어)이 없는 학생의 경우 주로 전문화된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로 진학하고, 이후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Powell et al., 2012).

그러나 2000년대부터 지식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학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연방의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고등교육이 독일 교육정책의 핵심 사안이 되었다.

독일은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비한 창의인재 육성과 학문연구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강화와 기존의 직업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여 교육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이후 「연방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금인 바팩(BAfoG)도 기존에 연방정부 65%, 주정부 35% 부담비율을 전액 연방정부 부담으로 변경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독일 내 대학의 신입생 비율은 2004년 37.4%에서 2014년 57.3%로 증가하였다(정수정, 2015).

4. 주요국 고등교육개혁 현황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의 최근 고등교육개혁 현황을 고등교육의 개혁 배경, 정책 방향 및 목표, 추진 주체, 대표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경쟁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영국, 직업교육과의 연계와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각 나라마다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수요에 입각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고등교육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각 나라마다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응하는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주요국의 고등교육 정책 요약

	미국	영국	독일
고등교육 개혁 배경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1980년대 이후 대학 교육 기회 확대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정부 주도의 질 관리로의 정책적 관심 변화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대두
정책 방향 및 목표	고급인력 공급 부족 전망에 따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대학 활성화	고등교육 기회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대학교육 평가 관리 강화	고등교육 확대와 직업교육 활성화 유지
추진 주체	정부 및 주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연방정부 권한 강화)
대표 정책 및 프로그램	- 학생, 대학, 주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 활성화 프로그램 대학 정보공시 제도 (College Scoreboard)	대학평가제도 -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학생 평가 설문조사 (NSS)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BAfoG)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 연구개발 지원 강화

미국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증가로 향후 대학교육을 이수한 고급인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펠 그랜트(Pell grant) 등 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비 지원과

대학 및 주정부 대상의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어 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위한 대학평가 기준에 있어서 4년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수준과 특성화 방향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경쟁력 있는 학생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객관적인 질적 관리와 평가를 위해 정부가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비정부 기구 및 기금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직접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여 선호도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의 발달로 인해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공립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고등교육개혁은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업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학을 핵심 주체로 활용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의 재정난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처럼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적 특성에 따라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적인 측면은 발달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는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산업사회와 다르게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에 필요한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사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들은 학사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IV.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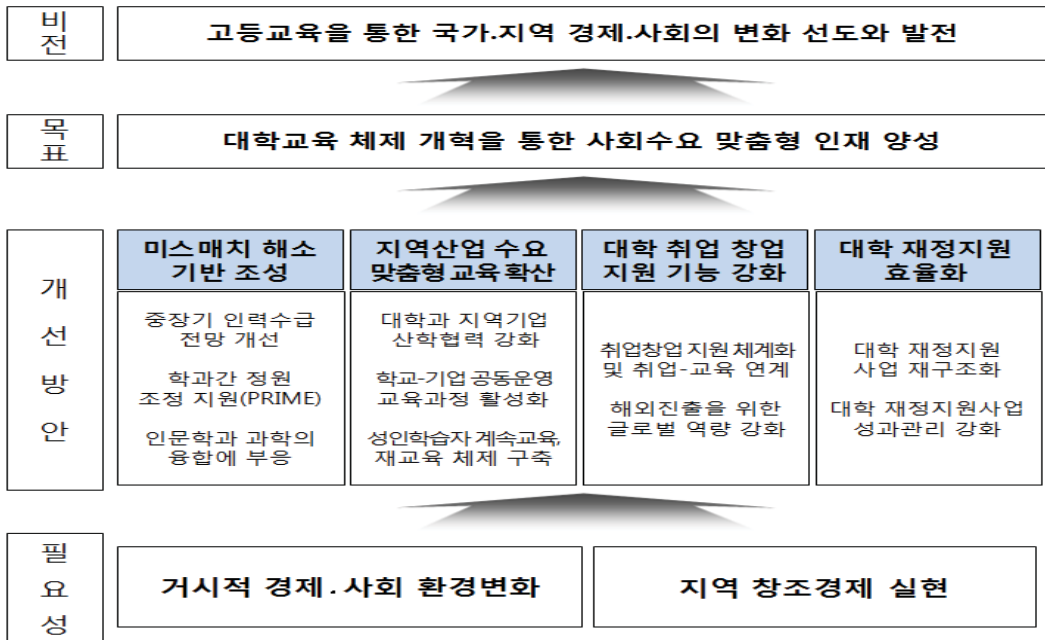
1. 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⁷⁾

현재 정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저출산·고

7) 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은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자료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FTA 등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전략 수립, 지역산업 수요와 대학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실현 등 고등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동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분야 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략



자료: 교육부(2015. 7.),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인재 양성 방안.’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등교육개혁의 비전은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지역경제·지역사회의 변화 선도와 발전’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 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산, 대학 취업·창업 지원 기능 강화, 대학 재정지원 효율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전략적으

로 모색하고 있다(교육부, 2015. 7.).

첫째,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진로 중심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도록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의 개편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하 PRIME)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인력양성은 산업수요의 변화에 의거하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대졸 청년들 중 절대 다수가 실업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부표 1>과 <부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 학과·정원 조정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산업소분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공별 수급차 전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 분야 등 창조경제를 선도할 다양한 학문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PRIME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전략의 토대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융합학문 시대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산을 위해 대학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이하 혁신센터)와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센터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각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해 나갈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이 양성한 지역인재에 대해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창업·벤처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2018년 이후 고졸자가 대학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부터 지방대학, 수도권대학, 전문대학 등이 보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 사업’ (이하 CK)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K 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학구조개혁과 직접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 변화를 수용한 학사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체질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9월 동 법률에 기초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교-기업 공동 운영 교육과정 체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고교-전문대 5년간 정보통신,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이론교육과 채용이 보장된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현장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 현장실습제 및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은 3-4학년 대상으로 최소 12주 이상의 대학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장기 현장실습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지역의 기업-전문대 채용약정 체결 후 방학 포함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 대학 내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대학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즉, 선취업-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의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계속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문대의 재직자 직업교육 기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취업 및 창업 지원 체계화 및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창업 지원 기능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로·취업·창업 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산업체·학생의 관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지원 강화 노력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 등에서 학생선발·현장학습·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취업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대학 역량을 ① 기초·교수-학습, ② 전공, ③ 연구, ④ 산학협력, ⑤ 평생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게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입각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교육부, 2015.7.).

〈표 5〉 정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대학 역량	기초·교수- 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구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 사업(CK)	BK21 PLUS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대상	학부	학부	대학원	학부	학부
지원 단위	대학(기관)	사업단	사업단	대학(+사업단)	4년제 대학
목적	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 및 확산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 집중 지원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연구인력 양성	산학협력 선도 모델 창출과 인재양성	후진학자 및 성인 친화적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특징	교양기초, 비교과 교육 강화, 대학 차원 교수-학습 질 개선	특성화로의 대학체질 개선 유도	'99년부터 시행 3단계(총 21년)	산학협력 교육 기업의 기술개발	일·학습 병행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사업 규모	'14년 573억 원	'14년 573억 원	'14년 2,729억 원	'14년 2,467억 원	'16년 300억 원
사업 기간	'10~(4년 단위)	'14~(5년 단위)	'13~(7년 단위)	'12~(5년 단위)	'16~(1년 단위)

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국립대 혁신지원(POINT),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 등 지원 목적 및 대상이 특정화된 사업은 재구조화 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5. 7. 27.), 교육부(2015. 10.)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2.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정부가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해 나갈 예정인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인재 양성 방안은 큰 틀에서 대학과 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교육 시스템 전반의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 능력중심의 교육 등 교육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고등교육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PRIME 사업을 통해 사회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간 정원 조정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과연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대학 또는 학과를 육성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학과 개편 또는 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이 급속한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전망에 입각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의 재정지원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수요 및 신산업 수요 창출 방안,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및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 자원이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새로운 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협력업체에서 채용하여 인력양성을 한 이후 과연 대기업이 이들을 본사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중소 협력업체에서 약 3년여 정도 양성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빼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산에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혁신센터와 대학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대기업은 과연 혁신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혁신센터를 통해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직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대육성법」의 제정 및 기본계획(2016~2020년)이 수립된 이후에도 지역 차원에서 이를 집행해 나갈 예산 및 조직의 변화가 전무하여 정책 실행 의지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역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설정하고 있는 법률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V.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주력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더욱 심화될 청년 고용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휴대폰, 철강 등 지역 기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졸자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날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 경제 불황에 대비하는 교육’ (education in hard time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고등교육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5.31 교육체제는 기존 제조업이 팽창하는 시기를 전제로 구축된 것이어서 새로운 시대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근력보다 창의력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RIME 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큰 틀에서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학과 조정의 참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전공별 인력수급전망만이 아니라 세계적 경제 흐름, 신산업의 출현, 유망서비스산업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보다 정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응하는 대학구조개혁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큰 틀에서 지방과 수도권 학생 수 및 학교 비율(약 6:4) 유지라든가 미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대학 육성 등에 한정하고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대학구조개혁은 반드시 해당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분명한 정책 방향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고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는 것이 정부 개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구조개혁 이후의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과 산업 간 현재와 미래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국에서 혁신을 위한 정책으

로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본래적 의미에서의 산학협력이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산업체와의 횡적 연계를 긴밀하게 강화함으로써 학교와 일터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기업,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산업 분석 및 인력수급전망을 지원하고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별 수요 맞춤형 특성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 수준의 인력수급전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첨단 기술 및 유망산업 등 기술진보가 빠른 영역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의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을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지원 기관들과 지역대학들을 연계시킴으로써 승자독식에 따른 지역 내 생존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만약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우수인력들을 보고서 작성에 투입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고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과 시·도 간 협력은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비정기적 모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지원 시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지역대학 지원 국비 중 일부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역대학 평가 및 컨설팅 추진 시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대육성법」 및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현행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체, 지자체와 대학 간 발전계획의 공유를 통한 지역 내 수평적 연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8a). 『교육개혁 추진성과 1995-1998』.
- _____ (1998b). 『교육개혁 요람』.
- _____ (2015.10).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공청회 설명자료,’ 보도자료.
- _____ (2015.8).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 보도자료.
- _____ (2015.7.27.).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인재 양성 방안,’ 보도자료.
- 김신영 외(2011).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평가 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교육과정평가원.
- 김이경·김경희·오대영·최돈민(2014).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발굴』, 교육부.
- 김형만(2015). ‘일자리와 미래의 과제.’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박남기(2015. 9.).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 포럼 발표논문.
- 박동·정향진·반가운·권우현(2015). 『유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병영 외(2014). 『한국의 교육개혁: 평가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안병영·하연섭(2015). 『한국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다산출판사.
- 이시균 편(201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3~2023』, 한국고용정보원.
- 이신동(2014). 「5.31 교육개혁의 두 얼굴」, 『월간 새교육』, 2014년 10월호.
- 이정재 외(2015).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혁신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임천순(2005).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44차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대졸 취업준비자의 취업 스펙에 대한 조사.’
- 정수정(2015). 「독일의 주요 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외국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운 외(201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크리스윤(Chris Yoon) (2013).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미국 교육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

- 선 제11호.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go.kr>.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_____ (2015). ‘2015년 1월~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한국생산성본부(2014).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 <http://www.kpc.or.kr>-보도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College Scorecard(미국 대학 정보공개) 웹사이트: <https://collegescorecard.ed.gov>.
- Hur, Joon-Young & Donata Bessey(2013). “A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South Korea and Germany.”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2011~2015).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Jones, R. S.(2013). “Education Reform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067, OECD Publishing.
- Powell, Justin J. W., Lukas Graf, Nadine Bernhard, Laurence Coutrot, Annick Kieffer(2012). “The Shifting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 in France and Germany: towards convergenc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47, No. 3, 2012.
- National Student Survey(NSS): <http://unistats.direct.gov.uk/>
-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5). “Trends in Pell Grant Recei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ll Grant Recipients: Selected Years, 1999-2000 to 2011-12.”
-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 OECD(2014).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Paris.
- Roger, Brown(2013). “Access to Higher Education: The Shift Towards Market-based Policies in the UK,” DICE Report.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issues/education/higher-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4). “2013~2014 Federal Pell Grant Program End-of-Year Report.”

Abstract

The Strategy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Society needs matched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Tong Park, Euikyoo L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ategy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society needs matched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Recently Korean society faces a lot of social environment changes such as entering a low growth era, widening of the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low productivity service industry, school-age population decline due to the low birth rate. Accordingly we need to transform the whole education paradig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oncept of society needs chang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higher education reforms in major countries,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reform. The government is pursuing several society needs matched policies. But many experts assess that those policies can not reach fundamental paradigm changes.

As a result of this, it appears as an urgent task to convert existing system into a new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alternatives to respond to this task.

[부록]

[부록 1]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 OECD, IMD 등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관련 지표인 대학교육 경쟁력, 고등교육 이수율(25~64세 인구) 증가 추이, 고졸자 대비 대학 졸업자 취업률 격차, 고졸자 대비 대학 졸업자 임금 비율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⁹⁾은 조사 분석 대상인 전 세계 60여 개 국가 중 38위(2015년 5월 기준)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53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의 대학교육 경쟁력을 보여 국가 경쟁력(25위)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 IMD 분야별 경쟁력 순위비교

(단위: 순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 경쟁력	23	22	22	26	25
대학교육	39	42	43	53	38
고등교육 이수율 (25~34세 인구)	2	2	2	2	2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25세~34세 인구)은 최근 5년 동안 비교 대상 국가들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우리나라의

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5월 50~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별 경제, 사회, 교육 분야의 경쟁력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강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가능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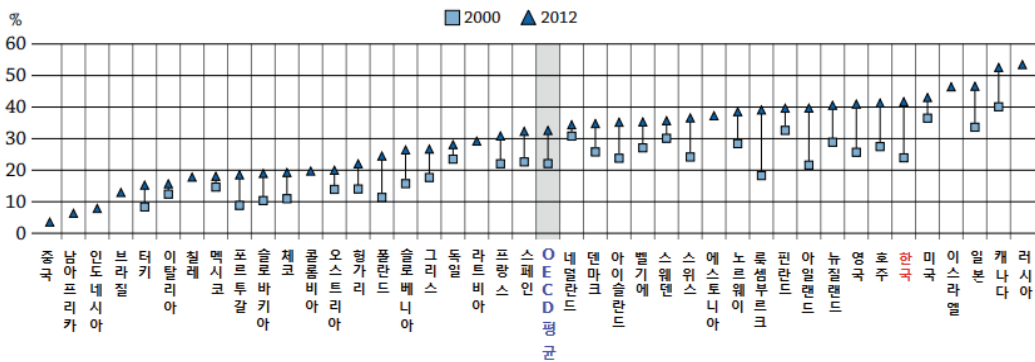
9) 이는 IMD의 국내 협력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등으로부터 확보한 100대 기업, 우량 중소기업 명단 등에서 약 2,000여 명 정도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등교육 이수율¹⁰⁾을 25세부터 64세까지 연령대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 6위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증가폭은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대학교육 경쟁력의 경우 국내 산업체가 직접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우리나라 산업계와 경제계의 대학 졸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음. 즉, 우리의 대학들이 산업·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또,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이 낮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1]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인구)

(단위: %)



주: 칠레, 콜롬비아의 자료는 2011년, 중국은 2010년 기준임.

자료: OECD(2014)의 Chart A1.1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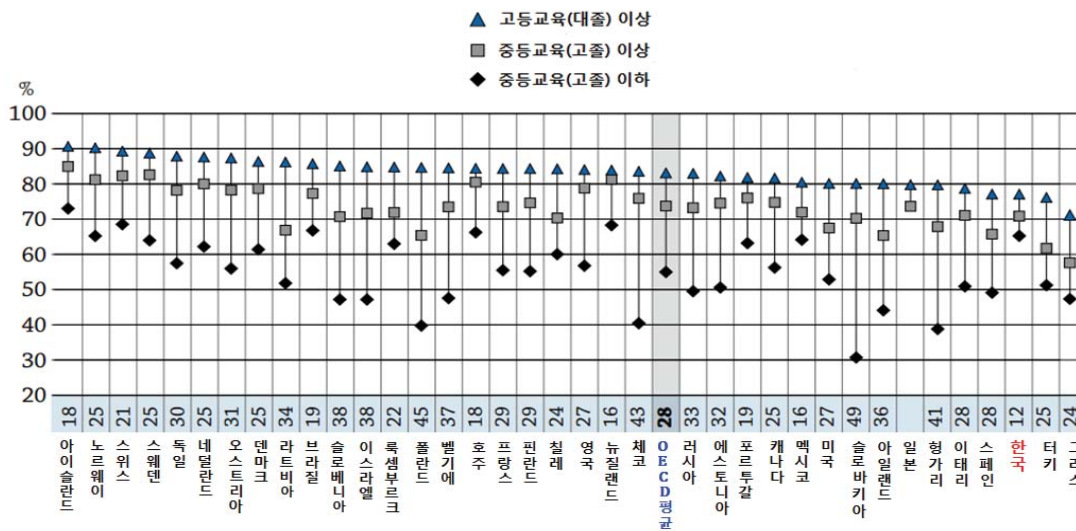
- 고등교육이 사회 진출 시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취업률과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대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대졸자 취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졸자와 대졸자의 취업률 차이

10) 이는 고등학교 이후 기술을 배우는 학교, 직업교육 기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도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졸자와 고졸 이하의 학력 보유자와의 취업률 격차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음(Jones, 2013).

- 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이수 후 직업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대졸 프리미엄’ 을 보여주는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147%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59%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174%, 영국 156%, 일본 15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교육과 고용 여건 속에서 대량의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고졸자와 대비하여 취업률이 높지 않고 임금 차이도 작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이 취업이나 임금 상승 요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OECD 국가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 취업률 격차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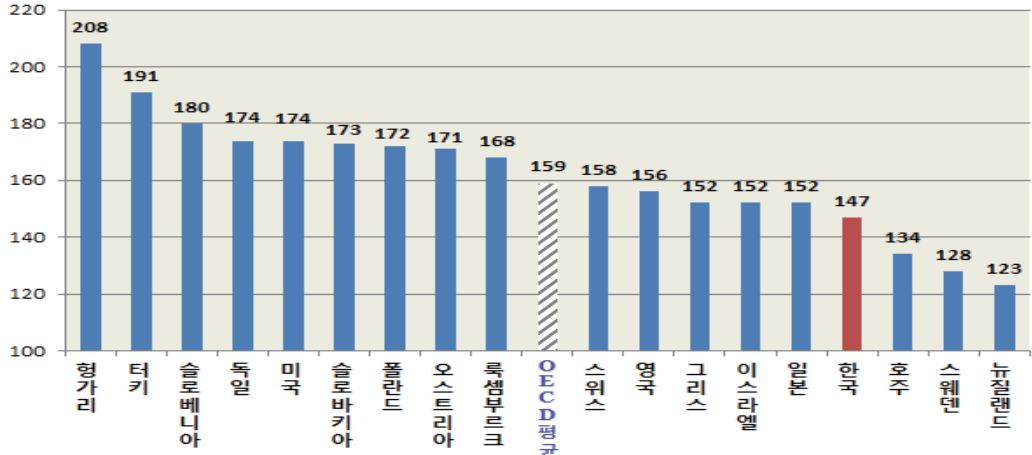


주: 음영표시 된 부분은 중등교육(고졸) 이하와 고등교육(대졸) 이상의 취업률(%)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OECD(2014)의 Chart A5.1을 재구성함.

[그림 3] OECD 국가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 비율 (2012년 기준)

(단위: %)



주: 25~64세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수치임.

자료: OECD(2014)의 Table A6.2a.를 재구성함.

<부표 1> 산업소분류(서비스업) 취업자 전망

Code	산업소분류	취업자(천 명)				취업자 증감(천 명)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08	2013	2018	2023	'08-'13	'13-'18	'18-'23	'13-'23	'08-'13	'13-'18	'18-'23	'13-'23
J58	출판업	157	269	319	388	112	50	68	119	11.4	3.5	4.0	3.7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3	70	81	97	7	11	15	27	2.1	3.1	3.5	3.3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4	199	238	291	105	39	53	92	16.2	3.6	4.1	3.9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9	62	79	93	24	16	14	30	10.0	4.8	3.3	4.0
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35	57	73	85	23	15	13	28	10.7	4.8	3.3	4.1
J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4	5	6	7	1	1	1	2	4.0	3.9	4.1	4.0
J60	방송업	37	59	72	80	22	12	9	21	9.8	3.8	2.3	3.1
J601	라디오 방송업	1	3	4	4	1	1	0	1	17.1	6.1	1.7	3.9
J602	텔레비전 방송업	36	57	68	76	21	11	8	20	9.5	3.7	2.4	3.0
J61	통신업	185	127	118	117	-58	-9	-1	-10	-7.2	-1.5	-0.2	-0.8
J611	우편업	59	50	46	46	-9	-4	-1	-4	-3.1	-1.6	-0.3	-0.9
J612	전기통신업	127	77	72	71	-49	-5	-1	-6	-9.4	-1.4	-0.1	-0.8
J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0	141	154	169	-29	13	14	28	-3.7	1.8	1.8	1.8
J63	정보서비스업	39	33	29	26	-6	-4	-3	-7	-3.1	-2.7	-1.9	-2.3
J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3	24	21	20	2	-3	-2	-5	1.3	-2.5	-1.6	-2.1
J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16	9	7	7	-7	-1	-1	-2	-11.1	-3.4	-2.6	-3.0
K64	금융업	372	387	360	347	15	-27	-13	-40	0.8	-1.4	-0.7	-1.1
K641	은행 및 저축기관	272	293	273	265	21	-19	-9	-28	1.5	-1.4	-0.6	-1.0
K642	투자기관	12	9	9	9	-3	0	0	0	-5.6	-0.3	0.2	0.0
K649	기타 금융업	88	85	78	73	-3	-8	-4	-12	-0.7	-1.8	-1.1	-1.5
K65	보험 및 연금업	335	328	322	319	-7	-6	-3	-8	-0.4	-0.4	-0.2	-0.3
K651	보험업	322	316	312	310	-5	-5	-2	-7	-0.3	-0.3	-0.1	-0.2
K652	재보험업	1	1	1	1	0	0	0	0	6.6	-3.2	1.0	-1.1
K653	연금 및 공제업	13	11	10	9	-2	-1	-1	-2	-2.9	-1.8	-1.6	-1.7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14	149	134	133	34	-15	0	-16	5.4	-2.1	-0.1	-1.1

K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71	64	53	48	-7	-11	-4	-16	-2.1	-3.8	-1.8	-2.8
K662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43	85	81	85	42	-4	4	0	14.5	-1.0	1.0	0.0
L68	부동산업	432	434	434	435	2	1	0	1	0.1	0.0	0.0	0.0
L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83	102	100	99	19	-2	-2	-3	4.2	-0.3	-0.3	-0.3
L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49	332	334	336	-17	2	2	4	-1.0	0.1	0.1	0.1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57	51	50	50	-5	-1	0	-1	-1.9	-0.6	0.0	-0.3
L691	운송장비 임대업	12	9	9	9	-2	0	0	0	-4.6	-0.5	0.2	-0.1
L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3	24	24	24	1	-1	0	0	0.6	-0.5	0.2	-0.2
L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1	18	17	17	-3	-1	0	-1	-2.9	-1.1	-0.4	-0.7
L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1	0	0	0	-1	0	0	0	-		1.3	
M70	연구개발업	104	155	279	330	51	124	51	175	8.3	12.4	3.4	7.8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90	137	249	296	47	112	47	159	8.7	12.6	3.5	8.0
M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4	18	30	34	4	12	4	16	5.1	10.9	2.5	6.6
M71	전문서비스업	315	508	553	633	193	45	80	125	10.1	1.7	2.7	2.2
M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85	96	89	91	11	-7	2	-5	2.4	-1.5	0.5	-0.5
M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6	99	96	101	23	-3	5	2	5.4	-0.6	1.1	0.2
M713	광고업	62	81	79	83	19	-2	4	2	5.4	-0.6	1.1	0.2
M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	10	11	12	3	0	1	1	7.4	0.6	1.9	1.2
M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83	221	279	346	138	57	67	124	21.6	4.7	4.4	4.6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8	247	253	260	19	6	7	13	1.6	0.5	0.5	0.5
M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182	178	175	174	-4	-4	-1	-5	-0.4	-0.4	-0.1	-0.3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6	69	79	86	22	10	8	18	8.2	2.8	1.9	2.3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9	112	120	136	3	8	16	24	0.5	1.4	2.6	2.0
M731	수의업	8	11	12	14	3	2	2	4	6.5	2.7	3.4	3.0
M732	전문디자인업	53	55	58	66	2	4	8	11	0.7	1.3	2.5	1.9
M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31	26	26	28	-5	0	2	3	-3.8	0.1	1.8	0.9
M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21	24	28	3	3	4	7	3.6	2.4	3.2	2.8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104	181	214	257	77	33	44	76	11.7	3.4	3.8	3.6
N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0	65	81	101	35	16	20	36	16.7	4.5	4.5	4.5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60	98	114	136	39	16	22	37	10.5	3.0	3.5	3.3
N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14	18	18	21	3	1	2	3	4.0	1.0	2.3	1.6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69	992	1,159	1,370	123	167	211	378	2.7	3.2	3.4	3.3
N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647	684	777	901	37	93	124	217	1.1	2.6	3.0	2.8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48	62	75	91	14	13	16	29	5.2	3.9	3.8	3.8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0	86	104	126	16	19	22	41	4.2	4.0	3.9	4.0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04	160	203	252	56	43	49	91	9.0	4.8	4.4	4.6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0	965	1,057	1,128	125	91	72	163	2.8	1.8	1.3	1.6
O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499	595	649	687	97	53	38	92	3.6	1.7	1.2	1.4
O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110	102	116	127	-8	13	11	25	-1.6	2.5	1.9	2.2
O843	외무 및 국방 행정	29	39	45	46	10	6	2	8	6.1	2.9	0.7	1.8
O84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201	225	243	262	25	17	20	37	2.3	1.5	1.6	1.5
O845	사회보장 행정	1	4	5	6	3	1	1	2	31.7	5.3	3.9	4.6
P85	교육 서비스업	1,784	1,748	1,714	1,691	-36	-34	-23	-56	-0.4	-0.4	-0.3	-0.3
P851	초등 교육기관	438	411	396	386	-27	-15	-10	-25	-1.3	-0.8	-0.5	-0.6
P852	중등 교육기관	329	347	348	347	19	0	-1	0	1.1	0.0	0.0	0.0
P853	고등 교육기관	210	233	237	239	23	4	2	6	2.1	0.4	0.2	0.3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13	19	21	23	6	2	2	4	7.7	2.4	1.4	1.9
P855	일반 교습 학원	534	439	405	384	-95	-35	-21	-56	-3.8	-1.6	-1.1	-1.3
P856	기타 교육기관	251	284	291	295	33	7	4	11	2.5	0.5	0.3	0.4
P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9	14	16	17	5	2	1	4	8.9	3.0	1.8	2.4
Q86	보건업	617	827	1,014	1,183	210	187	169	355	6.0	4.2	3.1	3.6
Q861	병원	346	457	551	640	111	94	89	183	5.7	3.8	3.0	3.4
Q862	의원	237	325	396	462	88	71	67	137	6.5	4.0	3.2	3.6
Q863	공중 보건 의료업	27	33	43	51	6	11	8	19	3.9	5.8	3.5	4.6
Q869	기타 보건업	7	13	24	29	6	12	5	17	12.2	13.7	3.9	8.7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	727	1,118	1,465	502	391	347	738	26.4	9.0	5.6	7.3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7	116	248	346	60	131	98	230	15.4	16.3	6.9	11.5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68	610	870	1,119	442	260	249	509	29.4	7.3	5.2	6.2
R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5	126	158	182	21	32	24	57	3.6	4.7	2.9	3.8
R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60	75	93	107	15	17	14	31	4.7	4.2	2.8	3.5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50	66	76	5	15	10	26	2.2	5.5	2.9	4.2
R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 비스업	313	266	259	241	-47	-7	-19	-25	-3.2	-0.5	-1.5	-1.0
R911	스포츠 서비스업	146	138	131	121	-8	-8	-10	-18	-1.1	-1.2	-1.5	-1.3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 련 서비스업	167	128	129	120	-39	1	-9	-8	-5.2	0.2	-1.4	-0.6
S94	협회 및 단체	250	255	266	321	5	11	55	66	0.4	0.8	3.8	2.3
S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24	27	29	36	3	2	7	9	2.7	1.5	4.3	2.9
S942	노동조합	5	4	4	5	-1	0	1	1	-3.7	0.2	3.4	1.8
S949	기타 협회 및 단체	221	223	232	279	3	9	47	56	0.2	0.8	3.8	2.3
S95	수리업	385	399	389	389	15	-10	0	-10	0.7	-0.5	0.0	-0.3
S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5	110	107	108	5	-3	0	-2	1.0	-0.5	0.0	-0.2
S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 리업	196	205	199	199	8	-5	0	-6	0.8	-0.5	0.0	-0.3
S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84	85	83	83	1	-2	0	-2	0.2	-0.5	0.0	-0.3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2	658	656	647	-5	-2	-9	-11	-0.1	-0.1	-0.3	-0.2
S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 스업	303	354	369	373	51	15	5	19	3.1	0.8	0.3	0.5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9	304	287	274	-56	-17	-13	-30	-3.3	-1.1	-0.9	-1.0

자료: 이시균 편(201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3~2023』, 한국고용정보원.

<부표 2> 산업소분류(서비스업 외) 취업자 전망

Code	산업소분류	취업자 수(천 명)				취업자 수 증감(천 명)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감률(%)			
		2008	2013	2018	2023	08'- 13'	13'- 18'	18'- 23'	13'- 23'	08'- 13'	13'- 18'	18'- 23'	13'- 23'
A1	농업	1,612	1,454	1,377	1,316	-158	-77	-61	-138	-2.0	-1.1	-0.9	-1.0
A011	작물 재배업	1,527	1,361	1,287	1,227	-166	-74	-60	-134	-2.3	-1.1	-0.9	-1.0
A012	축산업	79	83	86	86	4	3	1	3	1.0	0.6	0.1	0.4
A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4	0	0	0	-3	0	0	0	-44.8	-13.5	-8.8	-11.2
A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2	10	5	3	7	-5	-2	-7	33.1	-13.5	-8.8	-11.2

A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A020	임업	15	15	14	14	0	-1	0	-1	0.4	-1.7	0.2	-0.7
A3	어업	60	51	44	38	-8	-7	-6	-13	-3.0	-2.9	-2.8	-2.9
A031	어로 어업	42	39	34	30	-3	-5	-4	-9	-1.7	-2.5	-2.5	-2.5
A032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8	13	10	8	-5	-2	-2	-4	-6.6	-4.3	-3.6	-4.0
BB	광업	23	16	17	16	-7	1	0	1	-7.1	0.9	-0.3	0.3
B051	석탄 광업	7	3	3	3	-3	0	0	0	-12.7	-0.5	-0.8	-0.7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	0	0	0	-1	0	0	0	-72.8	12.7	21	54.2
B061	철 광업	0	0	0	0	0	0	0	0	10.3	-5.5	-1.6	-3.6
B062	비철금속 광업	1	0	0	0	0	0	0	0	-16.9	-5.5	-0.7	-3.1
B071	토사석 광업	12	9	10	9	-3	1	0	1	-6.3	1.4	-0.2	0.6
B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	1	1	1	-1	0	0	0	-14.0	5.1	1.0	3.0
B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1	2	2	2	2	0	0	0	30.0	0.2	-0.1	0.0
C10	식품 제조업	368	352	372	395	-16	20	23	43	-0.9	1.1	1.2	1.2
C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6	50	49	52	14	-1	3	2	6.7	-0.4	1.1	0.4
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1	43	55	57	2	12	3	15	0.7	5.1	0.9	3.0
C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3	26	32	34	-7	6	2	7	-4.3	3.9	1.1	2.5
C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6	6	8	8	0	2	0	2	-0.7	4.8	0.4	2.6
C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3	19	34	67	5	15	33	49	7.2	12.8	14.7	13.8
C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31	22	14	9	-10	-7	-5	-12	-7.2	-8.1	-8.2	-8.2
C107	기타 식품 제조업	197	176	172	161	-21	-5	-11	-15	-2.2	-0.5	-1.3	-0.9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	11	9	7	1	-2	-2	-4	1.2	-3.8	-4.5	-4.1
C11	음료 제조업	26	15	14	14	-11	-1	0	-1	-10.0	-1.8	0.0	-0.9
C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15	8	7	7	-6	-1	0	-1	-11.0	-2.7	-0.4	-1.6
C112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제조업	11	7	7	7	-4	0	0	0	-8.7	-0.7	0.4	-0.1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8	152	155	151	-25	3	-4	-2	-3.0	0.3	-0.6	-0.1
C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26	16	9	5	-10	-7	-4	-11	-9.6	-10.4	-12.0	-11.2
C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92	70	70	61	-22	-1	-9	-10	-5.2	-0.2	-2.7	-1.5
C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7	6	6	6	-1	0	0	0	-1.8	-0.1	-0.3	-0.2
C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35	34	44	50	-1	10	6	16	-0.5	5.2	2.5	3.8

	및 마무리 가공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8	26	26	29	8	0	3	4	7.8	0.3	2.3	1.3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92	269	271	273	-23	2	2	4	-1.7	0.1	0.2	0.1
C141	봉제의복 제조업	244	233	242	244	-12	9	2	12	-1.0	0.8	0.2	0.5
C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2	1	1	-1	-2	0	-2	-6.7	-24.8	1.9	-12.5
C143	편조의복 제조업	12	17	12	11	5	-6	0	-6	7.3	-7.7	-0.5	-4.2
C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33	17	17	17	-16	0	0	0	-12.4	-0.3	0.0	-0.1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4	68	72	76	4	4	4	9	1.3	1.2	1.2	1.2
C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	28	31	33	4	3	2	5	3.4	2.0	1.3	1.7
C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40	39	41	43	0	1	2	4	-0.1	0.6	1.1	0.9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9	48	67	78	9	18	12	30	4.4	6.6	3.3	4.9
C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0	12	14	16	2	3	2	5	4.1	3.9	2.7	3.3
C162	나무제품 제조업	28	36	52	62	8	16	10	25	5.0	7.4	3.5	5.5
C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	0	0	0	-1	0	0	0	-17.0	3.1	-5.9	-1.5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9	73	78	80	4	4	2	6	1.1	1.2	0.4	0.8
C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	22	22	22	-1	0	0	0	-1.1	-0.3	0.4	0.0
C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8	32	35	36	4	3	1	4	2.7	1.9	0.5	1.2
C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19	21	21	1	2	0	2	1.4	1.6	0.4	1.0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9	88	79	72	-21	-9	-7	-16	-4.1	-2.1	-1.8	-1.9
C181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108	88	79	72	-21	-9	-7	-16	-4.1	-2.1	-1.8	-1.9
C182	기록매체 복제업	0	0	0	0	0	0	0	0	-19.9	-366	-407	-38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1	139	140	140	18	1	0	1	2.7	0.2	0.0	0.1
C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7	28	32	33	1	4	1	5	0.4	2.7	0.7	1.7
C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6	3	4	0	-3	0	-3	1.3	-10.5	0.4	-5.2
C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4	23	21	18	8	-2	-3	-5	9.4	-1.6	-3.2	-2.4

	제조업												
C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3	75	74	76	12	-1	2	1	3.6	-0.2	0.5	0.1
C205	화학섬유 제조업	11	7	9	9	-4	2	0	2	-8.2	5.5	0.4	3.0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4	52	51	48	-2	-1	-3	-4	-0.6	-0.6	-1.2	-0.9
C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	3	4	4	2	1	0	1	13.4	3.7	1.3	2.5
C212	의약품 제조업	49	43	39	36	-7	-3	-4	-7	-2.9	-1.5	-1.9	-1.7
C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	6	8	8	4	1	0	2	16.9	3.2	1.0	2.1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6	234	264	272	49	29	8	37	4.8	2.4	0.6	1.5
C221	고무제품 제조업	43	49	53	53	6	4	0	4	2.7	1.5	0.1	0.8
C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3	185	211	219	42	26	8	33	5.3	2.6	0.7	1.7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9	108	106	106	-1	-1	0	-2	-0.2	-0.3	0.0	-0.2
C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5	33	35	36	7	2	1	3	5.1	1.2	0.8	1.0
C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2	17	15	15	-5	-1	-1	-2	-5.5	-1.5	-0.8	-1.2
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42	35	32	30	-7	-3	-2	-5	-3.4	-1.9	-1.1	-1.5
C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	23	24	25	4	1	1	2	3.7	0.8	0.6	0.7
C24	1차 금속 제조업	133	157	182	212	24	25	30	55	3.4	3.0	3.1	3.0
C241	1차 철강 제조업	92	101	114	130	9	13	16	29	1.9	2.4	2.7	2.6
C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3	36	44	53	13	8	9	17	9.5	4.0	3.7	3.9
C243	금속 주조업	18	20	24	29	2	4	5	9	1.8	3.8	3.6	3.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64	309	319	313	-55	10	-6	4	-3.2	0.6	-0.4	0.1
C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10	82	80	77	-28	-1	-4	-5	-5.7	-0.3	-0.9	-0.6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3	7	6	6	-6	0	0	-1	-11.8	-1.3	-1.6	-1.5
C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2	221	232	231	-21	11	-1	10	-1.8	1.0	-0.1	0.4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9	484	489	496	15	4	8	12	0.6	0.2	0.3	0.2
C261	반도체 제조업	96	100	100	101	3	0	1	1	0.7	0.1	0.2	0.1
C262	전자부품 제조업	169	211	227	239	42	15	12	27	4.6	1.4	1.0	1.2

C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30	14	11	10	-16	-3	-1	-4	-14.1	-4.6	-2.8	-3.7
C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25	118	114	113	-7	-4	-1	-5	-1.2	-0.6	-0.2	-0.4
C265	영상 및 음향기 제조업	47	40	35	33	-7	-5	-2	-7	-3.2	-2.5	-1.4	-1.9
C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	1	1	2	0	0	0	0	0.4	1.0	0.8	0.9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6	105	109	111	29	4	2	5	6.6	0.7	0.3	0.5
C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5	44	43	42	9	-1	-1	-2	4.6	-0.3	-0.4	-0.4
C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1	43	49	53	22	7	4	11	15.5	2.9	1.6	2.2
C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9	18	16	15	-1	-2	-1	-4	-0.7	-2.5	-1.7	-2.1
C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	1	0	0	-1	0	0	0	-20.6	-6.3	-4.1	-5.2
C28	전기장비 제조업	190	245	286	287	55	42	1	43	5.2	3.2	0.1	1.6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60	97	121	125	37	24	4	28	10.0	4.4	0.7	2.5
C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8	19	27	32	11	9	4	13	19.5	8.0	2.8	5.4
C283	절연 및 케이블 제조업	29	29	29	27	0	1	-2	-2	-0.3	0.6	-1.6	-0.6
C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	37	43	42	8	6	0	5	5.2	2.9	-0.2	1.3
C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56	51	52	47	-5	1	-5	-4	-1.8	0.3	-1.8	-0.8
C289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9	12	14	14	4	2	0	2	7.5	3.3	0.0	1.6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7	417	459	506	120	41	47	88	7.0	1.9	2.0	1.9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39	180	193	209	40	13	16	29	5.2	1.4	1.6	1.5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8	237	266	297	80	29	31	59	8.6	2.3	2.2	2.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8	454	500	525	66	45	25	71	3.2	1.9	1.0	1.5
C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111	114	119	121	3	5	2	6	0.5	0.8	0.3	0.5
C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6	6	5	-2	0	0	0	-7.0	-0.3	-0.4	-0.4
C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269	334	375	399	66	41	24	64	4.5	2.3	1.2	1.8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2	203	225	233	-19	22	8	30	-1.8	2.1	0.7	1.4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00	178	194	199	-22	16	5	21	-2.3	1.7	0.5	1.1
C312	철도장비 제조업	11	8	9	9	-3	1	0	1	-6.1	2.2	0.7	1.5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7	11	14	16	4	3	2	5	8.2	5.1	2.5	3.8

	부품 제조업												
C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6	8	9	2	2	1	3	10.1	5.4	2.7	4.0
C320	가구 제조업	89	84	80	80	-5	-4	0	-4	-1.1	-1.0	0.0	-0.5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08	108	109	109	0	1	0	1	0.1	0.2	0.0	0.1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23	19	17	16	-4	-1	-1	-2	-3.9	-1.5	-1.1	-1.3
C332	약기 제조업	4	3	3	3	-1	0	0	0	-3.9	0.6	0.2	0.4
C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7	8	9	9	1	1	0	1	2.3	1.4	0.7	1.0
C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7	10	10	10	2	1	0	1	5.5	1.1	0.5	0.8
C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66	68	70	70	2	1	0	2	0.6	0.4	0.1	0.3
CC	기타 제조업	11	16	19	20	5	3	1	4	7.4	3.3	0.9	2.1
CI20	담배 제조업	2	3	4	4	1	1	1	1	8.4	3.7	2.7	3.2
CI91	코르크스 및 연탄 제조업	0	0	1	1	0	0	0	0	12.6	16. 6	0.3	8.1
CI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9	13	15	15	4	2	0	2	7.0	2.7	0.5	1.6
D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2	73	79	88	1	6	10	15	0.3	1.5	2.3	1.9
D851	전기업	53	55	60	68	2	5	8	12	0.8	1.6	2.4	2.0
D8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5	15	16	18	-1	1	2	3	-0.7	1.4	2.3	1.8
D8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	3	3	3	0	0	0	0	-2.6	0.1	1.4	0.7
D860	수도사업	18	17	15	17	-1	-2	1	0	-1.3	-2.3	1.9	-0.2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8	53	56	56	5	3	0	2	1.9	1.0	-0.1	0.4
E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19	16	16	16	-3	0	-1	-1	-2.9	-0.1	-0.8	-0.5
E382	폐기물 처리업	22	26	27	27	4	1	0	1	3.7	1.0	0.0	0.5
E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8	11	12	13	3	1	0	2	7.1	2.3	0.8	1.5
EE	기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	20	21	21	2	1	0	2	1.7	1.4	0.1	0.8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4	17	18	18	4	1	0	1	4.9	1.3	0.0	0.6

E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	2	3	3	-2	0	0	0	-12.4	2.3	1.3	1.8
F41	종합 건설업	591	583	592	591	-9	9	-1	8	-0.3	0.3	0.0	0.1
F411	건물 건설업	439	434	438	436	-5	4	-2	2	-0.2	0.2	-0.1	0.0
F412	토목 건설업	152	149	154	155	-4	5	2	7	-0.5	0.7	0.2	0.4
F42	전문직별 공사업	1,220	1,171	1,178	1,176	-49	7	-2	5	-0.8	0.1	0.0	0.0
F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196	153	140	131	-43	-13	-9	-22	-4.8	-1.8	-1.3	-1.5
F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71	194	203	207	23	9	4	13	2.5	0.9	0.4	0.7
F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14	243	254	258	29	10	4	15	2.6	0.8	0.3	0.6
F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	520	416	396	381	-104	-20	-15	-35	-4.4	-1.0	-0.8	-0.9
F425	건설장비 운영업	119	165	186	198	46	21	13	34	6.7	2.4	1.3	1.9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0	150	180	206	19	30	26	57	2.8	3.7	2.8	3.3
G451	자동차 판매업	72	87	106	122	15	18	16	35	3.9	3.9	2.9	3.4
G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2	55	67	77	3	11	10	21	1.2	3.8	2.8	3.3
G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6	7	7	7	1	0	0	0	2.7	1.2	0.2	0.7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57	1,320	1,422	1,461	63	102	39	141	1.0	1.5	0.5	1.0
G461	상품 중개업	102	78	72	64	-24	-5	-8	-13	-5.3	-1.4	-2.3	-1.9
G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32	29	30	29	-2	1	-1	0	-1.4	0.5	-0.5	0.0
G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35	341	373	388	6	32	16	47	0.4	1.8	0.8	1.3
G464	가정용품 도매업	260	292	319	332	32	27	13	40	2.4	1.8	0.8	1.3
G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69	207	223	230	38	16	6	23	4.1	1.5	0.6	1.0
G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106	98	104	106	-8	6	1	8	-1.6	1.2	0.3	0.8
G467	기타 전문 도매업	241	249	268	274	8	19	7	26	0.6	1.5	0.5	1.0
G468	상품 종합 도매업	12	26	33	37	14	7	4	11	15.9	4.9	2.5	3.7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244	2,190	2,384	2,415	-54	194	31	225	-0.5	1.7	0.3	1.0
G471	종합 소매업	585	580	635	646	-5	55	11	66	-0.2	1.8	0.4	1.1
G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87	224	245	250	-63	21	5	26	-4.8	1.8	0.4	1.1
G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28	153	167	170	25	14	3	16	3.6	1.8	0.3	1.0

G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40	356	386	389	16	30	3	33	0.9	1.6	0.2	0.9
G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87	132	141	141	-54	9	-1	8	-6.7	1.3	-0.1	0.6
G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97	82	89	90	-15	7	1	8	-3.2	1.7	0.2	0.9
G477	연료 소매업	72	64	69	68	-7	4	-1	3	-2.2	1.3	-0.2	0.5
G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54	255	280	286	0	25	6	32	0.0	1.9	0.5	1.2
G479	무점포 소매업	294	343	371	375	49	29	3	32	3.1	1.6	0.2	0.9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13	1,117	1,222	1,263	103	105	41	146	2.0	1.8	0.7	1.2
H491	철도운송업	35	25	23	20	-9	-2	-3	-6	-6.0	-2.0	-3.1	-2.5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550	567	625	650	17	58	25	83	0.6	2.0	0.8	1.4
H493	도로 화물 운송업	326	402	441	456	76	39	16	54	4.3	1.9	0.7	1.3
H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102	121	132	136	19	11	4	14	3.4	1.7	0.6	1.1
H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0	1	1	1	1	0	0	0	46.1	6.0	2.9	4.5
H50	수상 운송업	33	33	35	37	1	2	1	4	0.4	1.2	0.8	1.0
H501	해상 운송업	29	31	33	35	3	2	1	3	1.9	1.2	0.8	1.0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4	2	2	2	-2	0	0	0	-14.4	1.4	1.0	1.2
H51	항공 운송업	32	26	31	32	-6	5	1	6	-4.0	3.4	0.7	2.0
H511	정기 항공 운송업	31	25	30	31	-6	5	1	6	-4.3	3.4	0.7	2.0
H512	부정기 항공 운송업	1	1	1	1	0	0	0	0	4.9	3.5	0.8	2.1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170	237	282	304	68	45	22	67	6.9	3.5	1.5	2.5
H521	보관 및 창고업	57	100	118	126	43	18	8	26	12.0	3.3	1.3	2.3
H529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113	137	163	177	24	27	14	40	3.9	3.6	1.6	2.6
I55	숙박업	117	122	124	125	5	2	1	3	0.8	0.3	0.1	0.2
I551	숙박시설 운영업	109	113	116	117	4	2	1	4	0.7	0.4	0.2	0.3
I559	기타 숙박업	8	9	8	8	1	0	0	-1	2.3	-0.8	-1.0	-0.9
I56	음식점 및 주점업	1,927	1,848	1,888	1,927	-78	40	39	79	-0.8	0.4	0.4	0.4
I561	음식점업	1,652	1,548	1,582	1,616	-105	35	34	68	-1.3	0.4	0.4	0.4
I562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274	300	306	311	26	6	5	11	1.8	0.4	0.4	0.4
J58	출판업	157	269	319	388	112	50	68	119	11.4	3.5	4.0	3.7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63	70	81	97	7	11	15	27	2.1	3.1	3.5	3.3

	출판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4	199	238	291	105	39	53	92	16.2	3.6	4.1	3.9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9	62	79	93	24	16	14	30	10.0	4.8	3.3	4.0
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35	57	73	85	23	15	13	28	10.7	4.8	3.3	4.1
J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4	5	6	7	1	1	1	2	4.0	3.9	4.1	4.0
J60	방송업	37	59	72	80	22	12	9	21	9.8	3.8	2.3	3.1
J601	라디오 방송업	1	3	4	4	1	1	0	1	17.1	6.1	1.7	3.9
J602	텔레비전 방송업	36	57	68	76	21	11	8	20	9.5	3.7	2.4	3.0
J61	통신업	185	127	118	117	-58	-9	-1	-10	-7.2	-1.5	-0.2	-0.8
J611	우편업	59	50	46	46	-9	-4	-1	-4	-3.1	-1.6	-0.3	-0.9
J612	전기통신업	127	77	72	71	-49	-5	-1	-6	-9.4	-1.4	-0.1	-0.8
J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0	141	154	169	-29	13	14	28	-3.7	1.8	1.8	1.8
J63	정보서비스업	39	33	29	26	-6	-4	-3	-7	-3.1	-2.7	-1.9	-2.3
J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23	24	21	20	2	-3	-2	-5	1.3	-2.5	-1.6	-2.1
J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16	9	7	7	-7	-1	-1	-2	-11.1	-3.4	-2.6	-3.0
K64	금융업	372	387	360	347	15	-27	-13	-40	0.8	-1.4	-0.7	-1.1
K64 1	은행 및 저축기관	272	293	273	265	21	-19	-9	-28	1.5	-1.4	-0.6	-1.0
K64 2	투자기관	12	9	9	9	-3	0	0	0	-5.6	-0.3	0.2	0.0
K64 9	기타 금융업	88	85	78	73	-3	-8	-4	-12	-0.7	-1.8	-1.1	-1.5
K65	보험 및 연금업	335	328	322	319	-7	-6	-3	-8	-0.4	-0.4	-0.2	-0.3
K65 1	보험업	322	316	312	310	-5	-5	-2	-7	-0.3	-0.3	-0.1	-0.2
K65 2	재보험업	1	1	1	1	0	0	0	0	6.6	-3.2	1.0	-1.1
K65 3	연금 및 공제업	13	11	10	9	-2	-1	-1	-2	-2.9	-1.8	-1.6	-1.7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14	149	134	133	34	-15	0	-16	5.4	-2.1	-0.1	-1.1
K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71	64	53	48	-7	-11	-4	-16	-2.1	-3.8	-1.8	-2.8
K662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43	85	81	85	42	-4	4	0	14.5	-1.0	1.0	0.0
L68	부동산업	432	434	434	435	2	1	0	1	0.1	0.0	0.0	0.0
L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83	102	100	99	19	-2	-2	-3	4.2	-0.3	-0.3	-0.3
L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49	332	334	336	-17	2	2	4	-1.0	0.1	0.1	0.1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57	51	50	50	-5	-1	0	-1	-1.9	-0.6	0.0	-0.3
L691	운송장비 임대업	12	9	9	9	-2	0	0	0	-4.6	-0.5	0.2	-0.1
L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3	24	24	24	1	-1	0	0	0.6	-0.5	0.2	-0.2
L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1	18	17	17	-3	-1	0	-1	-2.9	-1.1	-0.4	-0.7
L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1	0	0	0	-1	0	0	0	-100.0		1.3	
M70	연구개발업	104	155	279	330	51	124	51	175	8.3	12.4	3.4	7.8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90	137	249	296	47	112	47	159	8.7	12.6	3.5	8.0
M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4	18	30	34	4	12	4	16	5.1	10.9	2.5	6.6
M71	전문서비스업	315	508	553	633	193	45	80	125	10.1	1.7	2.7	2.2
M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85	96	89	91	11	-7	2	-5	2.4	-1.5	0.5	-0.5
M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6	99	96	101	23	-3	5	2	5.4	-0.6	1.1	0.2
M713	광고업	62	81	79	83	19	-2	4	2	5.4	-0.6	1.1	0.2
M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	10	11	12	3	0	1	1	7.4	0.6	1.9	1.2
M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83	221	279	346	138	57	67	124	21.6	4.7	4.4	4.6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8	247	253	260	19	6	7	13	1.6	0.5	0.5	0.5
M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182	178	175	174	-4	-4	-1	-5	-0.4	-0.4	-0.1	-0.3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6	69	79	86	22	10	8	18	8.2	2.8	1.9	2.3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9	112	120	136	3	8	16	24	0.5	1.4	2.6	2.0
M731	수의업	8	11	12	14	3	2	2	4	6.5	2.7	3.4	3.0
M732	전문디자인업	53	55	58	66	2	4	8	11	0.7	1.3	2.5	1.9
M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31	26	26	28	-5	0	2	3	-3.8	0.1	1.8	0.9
M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21	24	28	3	3	4	7	3.6	2.4	3.2	2.8
N74	사업시설 관리 및	104	181	214	257	77	33	44	76	11.7	3.4	3.8	3.6

	조경 서비스업												
N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0	65	81	101	35	16	20	36	16.7	4.5	4.5	4.5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60	98	114	136	39	16	22	37	10.5	3.0	3.5	3.3
N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14	18	18	21	3	1	2	3	4.0	1.0	2.3	1.6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69	992	1,159	1,370	123	167	211	378	2.7	3.2	3.4	3.3
N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647	684	777	901	37	93	124	217	1.1	2.6	3.0	2.8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48	62	75	91	14	13	16	29	5.2	3.9	3.8	3.8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0	86	104	126	16	19	22	41	4.2	4.0	3.9	4.0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04	160	203	252	56	43	49	91	9.0	4.8	4.4	4.6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0	965	1,057	1,128	125	91	72	163	2.8	1.8	1.3	1.6
O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499	595	649	687	97	53	38	92	3.6	1.7	1.2	1.4
O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110	102	116	127	-8	13	11	25	-1.6	2.5	1.9	2.2
O843	외무 및 국방 행정	29	39	45	46	10	6	2	8	6.1	2.9	0.7	1.8
O84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201	225	243	262	25	17	20	37	2.3	1.5	1.6	1.5
O845	사회보장 행정	1	4	5	6	3	1	1	2	31.7	5.3	3.9	4.6
P85	교육 서비스업	1,784	1,748	1,714	1,691	-36	-34	-23	-56	-0.4	-0.4	-0.3	-0.3
P851	초등 교육기관	438	411	396	386	-27	-15	-10	-25	-1.3	-0.8	-0.5	-0.6
P852	중등 교육기관	329	347	348	347	19	0	-1	0	1.1	0.0	0.0	0.0
P853	고등 교육기관	210	233	237	239	23	4	2	6	2.1	0.4	0.2	0.3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13	19	21	23	6	2	2	4	7.7	2.4	1.4	1.9
P855	일반 교습 학원	534	439	405	384	-95	-35	-21	-56	-3.8	-1.6	-1.1	-1.3
P856	기타 교육기관	251	284	291	295	33	7	4	11	2.5	0.5	0.3	0.4
P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9	14	16	17	5	2	1	4	8.9	3.0	1.8	2.4
Q86	보건업	617	827	1,014	1,183	210	187	169	355	6.0	4.2	3.1	3.6
Q861	병원	346	457	551	640	111	94	89	183	5.7	3.8	3.0	3.4
Q862	의원	237	325	396	462	88	71	67	137	6.5	4.0	3.2	3.6
Q863	공중 보건 의료업	27	33	43	51	6	11	8	19	3.9	5.8	3.5	4.6
Q869	기타 보건업	7	13	24	29	6	12	5	17	12.2	13.7	3.9	8.7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	727	1,118	1,465	502	391	347	738	26.4	9.0	5.6	7.3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7	116	248	346	60	131	98	230	15.4	16.3	6.9	11.5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68	610	870	1,119	442	260	249	509	29.4	7.3	5.2	6.2
R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5	126	158	182	21	32	24	57	3.6	4.7	2.9	3.8
R901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60	75	93	107	15	17	14	31	4.7	4.2	2.8	3.5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50	66	76	5	15	10	26	2.2	5.5	2.9	4.2
R91	스포츠 및 오락	313	266	259	241	-47	-7	-19	-25	-3.2	-0.5	-1.5	-1.0

	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146	138	131	121	-8	-8	-10	-18	-1.1	-1.2	-1.5	-1.3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167	128	129	120	-39	1	-9	-8	-5.2	0.2	-1.4	-0.6
S94	협회 및 단체	250	255	266	321	5	11	55	66	0.4	0.8	3.8	2.3
S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24	27	29	36	3	2	7	9	2.7	1.5	4.3	2.9
S942	노동조합	5	4	4	5	-1	0	1	1	-3.7	0.2	3.4	1.8
S949	기타 협회 및 단체	221	223	232	279	3	9	47	56	0.2	0.8	3.8	2.3
S95	수리업	385	399	389	389	15	-10	0	-10	0.7	-0.5	0.0	-0.3
S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5	110	107	108	5	-3	0	-2	1.0	-0.5	0.0	-0.2
S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96	205	199	199	8	-5	0	-6	0.8	-0.5	0.0	-0.3
S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84	85	83	83	1	-2	0	-2	0.2	-0.5	0.0	-0.3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2	658	656	647	-5	-2	-9	-11	-0.1	-0.1	-0.3	-0.2
S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303	354	369	373	51	15	5	19	3.1	0.8	0.3	0.5
S969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359	304	287	274	-56	-17	-13	-30	-3.3	-1.1	-0.9	-1.0
T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0	172	178	188	22	7	10	17	2.8	0.8	1.1	0.9
T970	가구 내 고용활동	149	172	178	188	22	7	10	17	2.8	0.8	1.1	0.9
T981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0	0	0	0	0	0	0	0				
T98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0	0	0	0	0	0	0	0	-100.0			
U990	국제 및 외국기관	16	7	7	5	-9	-1	-1	-2	-14.7	-2.5	-4.0	-3.3

자료: 이시균 편(201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3~2023』, 한국고용정보원.

□ 저자 약력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의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 발행연월일 2015년 11월 25일 인쇄
2015년 11월 29일 발행
- 발 행 인 이 용 순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5940-878-6 93370
- 인 쇄 처 (주)대명기획 (044)864-1293